

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ACH와 Fedwire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ACH and Fedwire as a Cross-Border Payment System

이병렬(Byeong-Ryul Lee)

창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 II. 결제운용상의 비교 | 참고문헌 |
| III. 법제적용상의 비교 | |
| IV. 위험관리정책상의 비교 | |

Abstract

This research want to discuss some issues about payment system of America. This research focuses on comparing ACH with Fedwire. Firstly Fedwire is the payment system for only large-dollar transfer(Large-Value Transfer System; LVTS), while ACH(Automated Clearing House)payment mainly applies a consumer account. Secondly ACH transaction is either credit or debit transfer, while Fedwire is only credit transfer. Thirdly the communication system of Fedwire has twoway method, telephonelike communication network, but ACH is oneway store and forward electronic mail. At present LVTS divides into RTGS(Real-Time Gross Settlement) and DNS(Deferred Net Settlement). However Fedwire uses either RTGS(instantaneous for every transaction) or DNS(net net transaction) but ACH uses only DNS(net net transaction). Fourthly ACH is substantially cheaper than the Fedwire payment. lastly security is important in both Fedwire and ACH, it is even more crucial in Fedwire In addition, for each transaction, Fedwire may entail individual instantaneous confirmation to the originator and notification to the receiver, whereas ACH do not.

Key Words : Fedwire, ACH, UCC 4A, Electronic Funds Transfer

* 2007년 전자무역포럼 및 국내 학술발표대회발표논문(제4섹션).

I. 서 론

1970년대 미국의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다국적기업의 등장과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등으로 폭주하는 은행업무를 전통적인 장표방식으로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들게 되자 새로운 금융결제방식의 도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안으로 전자자금이체방식(Electronic Funds Transfer; EFT)을 제안하게 되었다. EFT을 도입하고 난 이후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자금결제를 종이대신 온라인으로 지금 시를 이행하여 처리함으로서 결제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켰다. 즉 결제수단의 온라인(on-line)화는 관련서류들의 온라인서비스의 생성 및 유통을 가능하게 하여 무역업체와 은행이 결제 및 선적서류의 수령과 통지, 보관 등 모든 관련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용이하게 하여 기존의 오프라인(off-line)에서 사용되던 결제서류의 분실, 위·변조, 이중매입 및 훼손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¹⁾

현재 상거래결제업무에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구조적인 특징에 따라 다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앙은행이 운영하되 일중대월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총액결제시스템(RTGS)으로써 한국의 BOK-Wire, 스위스의 SIC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중앙은행이 운영하면서 일중대월이 허용되는 총액결제시스템인 미 연방준비은행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Federal Reserve wire Transfer Network; Fedwire),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은행 및 민간이 운영하되 차액결제방식(DNS)으로 운영되다가 최근 하이브리드시스템(hybrid)으로 전환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더욱 구축하고 있는 정산소 은행간 결제시스템(The 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 CHIPS)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본 고의 연구범위가 되는 결제금액 및 거래주체별로도 구분할 수 있다. 즉 거액 상업적자금이체에 이용되는 Fedwire와 소액 소비자간이체에 주로 이용되는 자동정산원(Automated Clearing House; ACH)으로 구분될 수 있다.

결제시스템운용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자동 정산소인 ACH이체는 컴퓨터에 기초한 전미 수표시스템에 대응되는 결제시스템으로서, 일괄처리 가치이체 전자지급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은행지로시스템과 유사하며 거래당사자간에 현금 및 수표를 직접 교환하지 않고 예금대체를 통해 결제한다. 다만 그 처리방식이 금융기관의 컴퓨터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 거래관련 정보를 일괄 처리방식(batch)에 의해 전자적으로 송·수신하고 이를 기초로 결제하는 전자적 정보교환을 이용한 자동교환결제방식을 택하고 있을 뿐이다. 동 시스템의 적용범위는 주로 지급이체(credit transfer), 추심이체(debit transfer),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관련결제, 판매대금 자동결제망(EFT/POS), 무역금융(Financial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등 기업간 이체에도 종종 이용되고 있어 적용범위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1) 결제업무의 온라인화는 특히 신용장거래 및 전자어음거래에서 두드러진다. 한국은 은행공동망에 의한 신용장의 전자적 통지 및 제시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다. 즉 기업, 대구, 외환, 하나,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이 공동으로 2005년 9월부터 신용장의 전자적 통지 및 유통서비스를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요한 은행들도 가까운 시일이내에 상용화할 계획으로 있다. 이에 부가하여 인터넷으로 어음을 발행하여 유통하는 전자어음제도를 도입함으로서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회계의 투명성의 제고, 유통비용의 감소, 그리고 배서의 확대를 통하여 어음유통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Federal Reserve Wire Transfer Network; Fedwire)은 상업적 거액이체시스템으로서 연방자금이체거래 및 유가증권자금이체거래에 집중된다. 따라서 Fedwire가 미국통일상법전 제4A편(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4A)의 실질적 지배만 받는데 반하여 ACH거래는 소액 소비자간 거래는 1978년 연방차원의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s Transfers of 1978)의 적용받지만 거액이체는 미국통일상법전 제4A편이 규율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Fedwire(이하 패드로 표기함)가 건별로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총액결제시스템(Real-Time Gross Settlement; RTGS)으로서 각 지급결제는 개별적으로 지급지시가 통신되거나 처리됨으로서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일중결제 방식인데 비하여 ACH는 결제일 1-2일 이전에 정산소(Automated Clearing House)에 방출되는 등 익일결제방식을 선택하고 있어 결제메커니즘상에서도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미국처럼 아직은 소비자간 금융거래와 기업간 거액거래가 확연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상기에서 밝혔듯이 인터넷뱅킹의 이용자수, 거래건수 및 금액의 증가추이를 보면 가까운 미래에 소비자간 거래와 기업간 거액거래를 구분하여 이를 거래들을 규율하게 될 환경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²⁾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각 자금이체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연구한 학자로서 정경영(1994), 손진화(1990) 등이 있지만 양 시스템을 상학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같은 점을 고려하여 상기의 시스템을 상호비교하는 주제로 연구범위로 정하였다. 즉 미국의 거액 상업적 결제시스템의 대표격인 패드와 소액 소비자간 결제시스템인 ACH의 상호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각각의 시스템상의 장·단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한다.

II. 결제운용상의 비교

1. 지급메커니즘

총액결제시스템인 미국의 연방준비은행³⁾의 패드의 당사자는 원지시인(originator), 원지시인의 거래은

2) 결제업무의 온라인화를 촉진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서 인터넷뱅킹의 이용자수의 급속한 증가를 들 수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현황'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으로 19개 금융기관에 등록한 인터넷뱅킹 고객의 수는 4,470만명으로 2006년 말 3,591만 2천명보다 2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조회, 자금이체 및 대출서비스 이용은 하루 평균 1,792만 건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하였고 한국은행의 BOK-Wire에 의한 자금이체금액도 전년대비 40.0%가 늘어났다. 특히 인터넷뱅킹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각 시중은행의 비대면거래가 전체업무의 79.6%를 차지함으로서 인터넷뱅킹을 통한 업무처리는 60.0%, CD/ATM의 비중도 44.5%을 차지하여 창구를 통한 대면거래의 업무의 비중을 그 절반 못되는 수준인 20%이하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조회서비스는 비대면거래가 81.8%까지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온라인 금융거래의 증가에 힘입어 이를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관련법 제의 제정도 있었다. 즉 2006년에 제정된 '전자금융거래기본법'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에서 동 법이 발효됨으로서 소액거래에서도 고객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법적근거를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행(originator's bank), 중개은행(intermediary's bank), 수익자의 거래은행(beneficiary's bank), 그리고 수익자(beneficiary)로 구성되어 있다. 원지시인의 거래은행 또는 수익자의 거래은행으로서 연방준비은행은 정부의 부서 및 대리기관이 될 수 있다.⁴⁾ 종종, 연방준비은행의 고객들은 그들 자신의 고객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행동하는 금융기관들(상업은행들)이 된다. 따라서 원지시인과 수익자간은 패드시스템을 통하여 원지시인의 거래은행과 수익자의 거래은행에 통신한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은행은 전송자(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의 계정에 추심이체하여 결제하고 수신은행(수익자의 거래은행)의 계정에 지급이체한다. 사실 패드시스템은 당일 자금이체시스템이기 때문에 자금이체영업일인 당일에 해당 자금이 원지시인에서 수익자에게로 결제될 수 있다. 즉, 하루 만에 메시지통신을 수행하고 원지시인의 계정에서 수익자의 계정으로 자금이 이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당일 이행은 보장되지 아니하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패드는 발전된 통신네트워크와 함께 특별한 결제메카니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결제시스템이 실시간 온라인 통신을 제공하는 전용선으로 참여은행(시중 상업은행)들을 연결하면 이들 시스템이 연결된 메시지를 신속하게 거액으로 지급, 통신, 처리 및 결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은행간 결제는 은행간 통신약정을 체결한 참여자들간의 관계를 통하여 발생하거나,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가지고 있는 계정에서 발생된다.⁵⁾ 왜냐하면 상업은행들은 고객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요구 부응하는 지급을 하기 위하여 결제계정과 유동성을 중앙은행에 항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 계정을 통하여 상업은행들은 중앙은행의 통화로 그들의 최종결제를 달성한다. 이러한 결제시스템의 체계는 그 정점에서 중앙은행⁶⁾(미 연방준비은행)이 존재하고 그리고 하부구조에 고객으로서 상업은행을 두어 피라미드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미 전역을 영업 지역으로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금이동이 신속하고 안전하며 동시에 최종성을 제공하는 총액결제시스템으로서 동일한 날 결제가 이루어지는 가치이체시스템이다. 외국은행도 패드시스템에 미국에 있는 그들의 지점, 대리인 및 은행자회사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비 참가자도 패드시스템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즉 패드시스템과 통신약정을 체결한 은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

3)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이 위치한 도시명은 다음과 같다; 보스톤, 뉴욕(버팔로 지점), 필라델피아, 클리브랜드(신시내티 및 피츠버그 지점), 리치몬드(발티모어 및 샤토트 지점), 아틀란타(버밍엄 및 체슨빌, 마이애미, 내슈빌, 뉴올리언즈 지점), 시카고(디트로이트 지점), 세인트루이스(리틀록, 루이스빌, 멤피스지점), 미네아폴리스(헬레나 지점), 캔자스(텐버, 오클라호마시티, 오마하지점), 엘라스(엘파소, 휴스頓, 산안토니오지점), 샌프란시스코(로스엔젤레스, 포틀랜드, 솔트레이크, 시애틀 지점).

4) 뉴욕의 연방준비은행 역시 이 은행의 외국중앙은행고객을 위하여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이 될 수 있다.

5) 이병렬, “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CHIPS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 12, pp.75-76.

6) 미국에서 연방준비은행은 통화정책을 지휘하고, 은행시스템의 안전성, 건전성, 그리고 유동성을 관리하는 책임을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재무 당국인 재무성의 금융업무중 일부를 수행함으로서 재무성의 은행이 되어, 재무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국내지급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탁기관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 중 전자자금결제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즉 미연방준비은행의 결제시스템(Fedwire)은 12개 연방준비은행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금이체시스템으로서 매일 수십 조 달러가 이체되는 통신 및 결제시스템시설을 제공함으로서 미국전역에 대략 9,400개의 예금금융기관과 연결된, 전국적인 전자네트워크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병렬·이천우, “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CHIPS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4호, 한국 통상정보학회, 2006.12, p.78.

하다는 점이 장점이다.⁷⁾

또한 ACH⁸⁾(이하 ACH 또는 정산원으로 표기함)에 의한 지급시스템의 당사자도 기본적으로는 원지시인(originator), 수신자(receiver), 지시이행 금융기관(originating depository institution; 원지시인거래은행이라고 표기함), 수신금융기관(receiving depository institution; 수신자거래은행이라고 표기함), ACH운영자⁹⁾(operator)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패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지시인과 수신인은 결제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다.¹⁰⁾ 원지시인은 지급지시를 입력하지만 수신인은 출력된 데이터를 수신할 뿐이다. 패드가 지급이체(credit transfer)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ACH이체에서는 지급이체(credit transfer)와 추심이체(debit transfer)양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급이체에서는 원지시인이 지급인이고 수신인이 피지급인이다. 역으로 추심이체에서는 원지시인은 피지급이며 수신인은 지급인이 된다. 지급지시이행은행과 수신은행은 각각 원지시인과 수신인의 거래은행이 된다. ACH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지급지시의 이행금융기관 없이 단지 수신금융기관으로서 존재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시이행금융기관이 수신금융기관으로서 행동하는데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소비자 ACH거래에서 수신금융기관이 최소인도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

ACH이체에서 결제 데이터(지급지시)는 원지시인에서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ACH운영자¹²⁾에게 전송되고, 다시 수신자거래은행을 거쳐 최종 수신자에게 지급이체된다. 은행간 결제에서 실제 데이터는 뉴저지에 위치해 있는 이스트 루쓰포드(East Rutherford)의 연방준비은행의 처리시스템으로 수신된다. 뉴욕에 있는 전자지급망을 포함하여 특별한 예외는 ACH운영자가 민간의 운영자일 수도 있지만 지역간 통신은 연방준비은행의 통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접속방법에 있어 패드는 온라인(on-line)방법과 오프라인(off-line)방법을 병용하고 있지만¹³⁾ ACH거래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연방준비은행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오직 전자적인 방법(on-line)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참여 금융기관들

7) <http://www.nyfrb.org>, 20 Nov., 2007.

8) ACH 지급망(network)에는 520,000개의 금융기관, 500,000개 이상의 기업,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적인 전자결제시스템이다.¹⁾ ACH는 1972년 전통적으로 종이수표 대안으로 전자적으로 결제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 정산소 협회(CACHA)가 설립되면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또한 1974년에 전미 자동정산소협회(NACHA)가 전국적인 규정의 표준의 개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자동정산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서 전국적인 ACH 설립을 위하여 구성되면서 조지아주, 뉴질랜드주 및 중서부주들에서 지역 ACH가 설립되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자리를 구축한 것은 1970년대 말에 와서야 가능하였다; Benjaminb Geva, *The Law of Electronic Funds Transfers*, Matthew Bender, Dec. 2003, pp.5-6-7.

9) ACH운영자는 NACHA와 체결한 약정을 이행하는 연방준비은행 및 민간운영자로 정의하고 있다; *ACH Rules*, 13.1.1.

10) 알래스카, 하와이 및 푸에르토리코도 이 시스템의 회원이 되었다.

11) ACH이체는 크게 기업ACH와 소비자 ACH로 구분된다.

12) ACH운영자는 지시이행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지시데이터를 수신금융기관으로 전달하는 중앙처리정산시설이다.

13) 패드로의 접속은 온라인(On-line) 또는 오프라인(Off-line)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패드에 전자적으로 접근을 하는 은행을 온라인으로 메세지를 전송하고 수신한다는 면에서 '온라인 은행'(On-line bank)이라 하고 역으로 전자적 접근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은행을 '오프라인 은행'(Off-line bank)이라 한다. 패드와의 오프라인 연결은 콜백절차(call back procedure)나 ID를 통하여 가능하다. 온라인 은행도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오프라인의 절차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온라인 접속은 컴퓨터 인터페이스접속 및 패드라인(Fedline) 터미널에 의하여 가능하다. 현재 패드의 자금이체서비스의 참가자는 대략 9,400개인데 그 중에서 12.5%인 약 1,200개가 오프라인 참가자이며 나머지 8,200개가 온라인 참가자이다. 온라인 참가자중에서도 350개가 컴퓨터인터페이스 접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 7,850개의 참가자가 패드라인 터미널 접속자이다. 현재 패드를 통한 자금이체금액의 99.9%가 온라인 이체계정이다.

은 일반적으로 ACH지역협회 회원들이다.¹⁴⁾ 지역 ACH협회는 NACHA(National Automated Clearing House Association)을 형성하고 이 NACHA는 ACH가 전미 결제시스템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네트워킹되어 있다.¹⁵⁾ 그러나 NACHA와 대부분 지역 ACH협회는 단지 거래협회이지 데이터의 흐름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패드가 일중결제(Intraday Settlement)방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반하여 ACH는 일말결제방식(End-of-day Settlement)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2. 메세지통신시스템

ACH지급을 위하여 연방준비은행이 이용하는 메세지와 패드시스템이 이용한 메세지시스템은 서로 다르다. 실제적으로 패드가 동시에 통신을 수반하는 단일거래를 수용하기 위하여 전화처럼 양방향통신망이 필요하다. 동시에 실시간으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일괄(묶음)처리도 수용하며 이 경우 부분적으로 지연도 발생하기도 한다.¹⁶⁾ 그러나 ACH는 전자메일에서 사용되는 종류와 유사하게 일 방향으로 저장 및 제시되는 지급메세지시스템이다. ACH결제메카니즘에서 운용중인 다양한 지급지시 처리 단계중에서, 데이터처리는 또 다른 처리장소나 수신금융기관에게 일괄로 제시되기 이전에 저장된다.¹⁷⁾ 전자메일은 전화보다 정보를 전송하는데 비용이 저렴한 것처럼 ACH이체도 패드시스템보다 전송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주요한 이유는 보안절차의 설립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⁸⁾ 즉 ACH이체나 패드이체에서 보안장치는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패드이체가 단일 거래 및 거액이체라는 점에서 보안절차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데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패드거래는 원지시인에게는 전송된 지급지시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동시에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익자에게는 개별통지가 필요하지만 ACH이체에서는 개별통지 및 확인이 필요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14) NACHA의 지역 ACH협회 회원은 ACH참가자는 아니지만 협회규칙 및 주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교육과 훈련, 지역이나 국가적인 주요한 이슈에 대한 포럼을 개최한다. 운영자와 약정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규율할 규칙을 제정하기도 한다. 금융기관들은 지역ACH협회의 회원이 아니라도 연방준비은행의 ACH 운영자에게로 접속도 가능하다.

15) Credit Union, "ACH payment hit the web NACHA's new guidances could boost ACH internet payment, CREDIT CARD MANAGEMENT, Vol.14, No.7, 2001, pp.21-22.

16) <http://www.fedwiredirectory.frb.org>, 10 Nov., 2007.

17) Credit Union, "New ACH efficiencies have credited faster cash flows and realtime financial data for consumer, CREDIT UNION MAGAZINE, Vol.67, No.11, 2001, pp.23-25.

18) 그 외 캐나다의 거액가치이체시스템(Large Value Transfer System; LVTS), 영국의 정산소 자동결제시스템(The Clearing House Automated Payment System; CHAPS), 스위스는 은행간 정산시스템(Swiss Interbank Clearing; SIS), 일본은 행 금융네트워크시스템(Bank of Japan Financial Network System; BON-NET), 그리고 독일의 총액결제시스템(Real-Time Gross System; RTGS Plus)을 각각 설립하여 운용 중에 있어 금융 및 대금결제의 온라인화는 세계적으로도 점점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III. 법제적용상의 비교

1. 관련법제

ACH이체는 지급이체와 추심이체로 이루어진다. 실제 ACH이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어떠한 제정법¹⁹⁾도 없다. 다만 비소비자지급이체에서는 은행의 처리과정이 패드이체와 동일하기 때문에 미국 통일상법전 제4편(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4)에 미국법 협회(American Law Institute; ALI)와 통일주법전국위원회(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in Uniform State Laws; NCCUSL)가 승인을 하여 ‘전자자금이체’ 편을 추가한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이하 제4A편이라 표기함)²⁰⁾이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소비자 ACH거래의 추심이체와 지급이체의 일부분은 연방차원에서 1978년에 ACH거래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한 전자자금이체법²¹⁾(Electronic Funds Transfers Act of 1978)에서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이 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받음에 따라『규정 E (Regulation E)』²²⁾을 만들어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을 이행하고 있다.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은 2000년에,『규정 E』는 2003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그리고 『규정 E』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기적인 문답식으로 발행하는 공식주석서(Official Staff Commentary on Regulation E)에 의하여 보충되고 있다.²³⁾

추심이체에서 은행처리과정은 수표추심과 유사하지만 수표거래에 적용되는 미국 통일상법전 제3편 및 제4편은 ACH 추심이체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대신 ACH규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추심이체(부도수표(RCK)의 재 제시를 제외하고)에서 ACH규칙과 제4A편이 불일치한 경우는 제4A편이 우선 적용된다.²⁴⁾ 부도수표의 제시는 제4A편하에서는 부도통지 및 제시를 위한 목적에서만 규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ACH 추심 및 지급이체는 지역 ACH협회규칙의 보록으로서 NACHA 운영규칙 및 운영회람에 의하여 규율된다. 정부ACH지급이체는 우선적으로 재무규정²⁵⁾(Treasury Regulation)에 의하여 규율된다. 연방준비은행은 상업적 ACH지급 및 추심이체에 적용할 수 있는 통일운영회람과 정부ACH지급이체에 적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표준회람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ACH 추심이체는 패드를 규율하는 제4A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²⁶⁾

19) 미국의 전자결제시스템은 연방법, 주법, 그리고 사적약정 등 다양한 법적 체계에 의하여 규율된다.

20) 이병렬, “신국제결제시스템으로서 전자자금이체에서의 고객보호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 pp.234-237.

21) 15 U.S.C. 1693 *et seq.*

22) 12 C.F.R. 205.

23) 한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신용카드소유자의 책임임을 규율하기 위하여 대부진실법(Truth in Lending Act; TILA)²⁷⁾이 존재하며 대부진실법 또한『규정(Regulation Z)』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다.

24) ACH Rules, 13.1.24.

25) 31 C.F.R. 210.

한편 패드는 사실상 제4A편에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²⁷⁾ 그러나 패드도 ACH와 유사하게 제4A편과 불일치할 경우 「Regulation(규정) J」²⁸⁾의 「Subpart(하부조항) B」가 대체하여 규율하고 있다. 「Subpart B」는 자금이체운영의 상세조항을 일차적으로 규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Subpart B」는 자금이체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연방준비은행이 발행하기로 수권을 받은 운영회람의 조항에 의하여 더 깊이 보충된다. 운영회람(operating circular)은 「Subpart B」와 일치하여야 하고 결산시간과 자금이체영업일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ACH지급은 패드가 상업적인 용도의 거액이체에 적용되는데 반하여 소액이체에 주로 이용된다. 따라서 패드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ACH이체가 이용되는 분야는 거래주체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첫째는 소비자거래에 적용되는데 이는 소비자계정으로 이체되거나 소비자계정에서 인출되는 이체이다. 여기에는 PPDE²⁹⁾, CIE³⁰⁾, POS³¹⁾, POP³²⁾, RDC³³⁾, ARC³⁴⁾, On-line에

26) 제4-103(a); Sinclair Oil Corp. v. Sylvan State Bank, 869 P.2d 675 (Kan.1994).

27) 제4A-105(a)(5).

28) 미국에서는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과 1989년 제4A편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나머지 다수의 문제는 당사자간의 사적약정에 의하여 대부분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의 제정법들 이외에 사적약정 등을 두어 실체적으로 온라인 결제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규율하고 있다. 상기의 연방법과 제4A편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적약정 등이 필요한 이유는 은행간 온라인 결제는 해당시스템과 참가자간에 체결된 자금결제약정이 우선하여 자금결제서비스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행협회에서 운영되는 자금이체시스템의 규칙들은 제4A편의 일부 조항과 달리하면서 은행고객과 자금결제시스템의 다른 비회원을 구속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적약정으로는 패드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 J」 및 ACH를 규율하기 위한 「ACH 규칙」 등이 포함된다.

29) PPDA(Prearranged Payment and Deposit Entries)는 예정된 지급 및 예탁이체로서 소비자이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도 두 종류의 이체형식이 있다. 먼저 직접예탁은 지급이 개별 소비자의 계정으로 이체되는 지급이체이다. 둘째 PBP(Preauthorized Bill Payment; 선수권된 어음지급)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지급이 소비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추심지급의 형식이다. 보험회사, 저당회사와 같은 대부자, 각종 서비스제공자(수도 및 가스와 같은 공익회사, 클럽, 케이블사 등)등과 같이 어음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결제 만료 시점에 각 채무자가 그의 계정에 정기적인 인출금액에 해당되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였을 경우 지급받는 방식을 의미한다.

30) CIE(Customer Initiated Entries)는 고객인 소비자가 지급예탁을 지시한 어음지급의 방식이다. CIE의 전형적인 모델은 홈뱅킹이다. 이 방식은 어음을 수취한 채무자인 소비자는 채권자의 계정으로 지급을 위해 그의 거래은행에게 지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CIE는 PBP와 종종 비교되지만 그 지급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CIE는 PBP가 소비자의 현행수권에 기초하여 채권자기업이 지시하는 추심이체인데 반하여 소비자의 지급지시로 시작되는 지급이체이다. CIE는 어음제시인 및 어음지급서비스제공자가 소비자의 주소, 소비자의 계정 정보, 어음제시인 및 어음지급서비스제공자의 정보를 전송 한다.

31) POS and SNE(Point-of-Sale and Shared Network Entries)는 수신자의 계정으로 POS거래로부터 발생되는 지급을 이행하거나 현금인출을 위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전자터미널에 인출을 지시하는 추심이체이다. 이와 유사한 SNE는 기능적으로 POS와 동일하지만 공유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된다는 점이 다르다.

32) POPE(Point-of-Purchase Entries)는 종종 전자수표로 지칭된다. 소비자계정에 상인 및 어음제시인(biller)이 구매시점에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추심하여 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된다. 구매시점예탁관리에서 원지시인의 의무는 ACH Rule 3.7에서 규율한다.

33) RDC(Re-presentation of Dishonored Check)는 부도수표 재 제시방식으로서 수표가 제시될 때 자금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예탁한 수표가 부도처리가 될 때 상인이 소비자의 계정에서 추심하여 이체하는 방식이다; ACH Rules, 2.8.1; 이 방식은 「규정 E」에서 규율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규정 E」는 수표로 전송된 이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ACH Rules, 2.1.2-4.

수권된 인터넷 입력³⁵⁾, TAE 및 ATM 인출 등에 적용된다.

둘째, 기업간 거래에 적용되는데, 이 경우는 소비자이체에 포함되지 않는 B2B이체이다. B2B적용사례에도 크게 두 가지 양식, 즉 EDI을 통한 무역결제방식과 현금집중 및 분배방식(Cash Concentrations and Disbursement; CCD)이 존재한다. 먼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을 통한 무역결제방식의 특징은 지급데이터에 따라 무역정보가 전송된다는 점이다. 종이에 기초한 결제방식에서 거액 결제수단인 수표 및 어음은 송금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때 수신자는 송금통지에 포함된 데이터를 입력한다. 이 방식은 처리과정이 길어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EDI를 통한 전자결제방식은 복잡한 결제통지데이터가 ACH를 통하여 원지시인에게서 수신자에게 직접 전송되어 어떠한 물리적인 개입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비자ACH와 차이점은 소비자ACH에서 수신은행은 최소 전달기능만 수행하지만 EDI를 통한 ACH무역결제방식에서는 전달기능이외에 수신은행이 결제와 관련된 주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ACH무역결제시스템의 장점은 수신자가 입력한 무역데이터를 금융기관이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 어떠한 금융기관 및 ACH 참가자도 방대한 무역정보에 의하여 수반된 무역결제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³⁶⁾ EDI를 통한 ACH무역결제시스템은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이 ACH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지금이 체로서 예탁입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기업무역지급시스템(CTP)으로 도입되었다.³⁷⁾ 그 후 CTP을 개량한 CTX을 도입하였는데 이 CTX의 큰 특징은 재 포맷이 없이도 ANSI/X12.4(X12.5, X12.6, X12.85을 포함하여)을 지원하거나 94개의 레코드³⁸⁾을 고정되게 이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길이의 레코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CTX의 신축적인 레코드이용은 CTP에서 필요한 고정된 레코드보다 신축

34) ARC(Accounts Receivable Check Truncation)는 미국에서 우편으로 도착하는 원지시인의 수표가 원지시인의 *dropbox*에 도착하게 되면 지급이 개시되는 소비자의 계정에서의 one-time 추심예탁방식이다. 즉 소비자가 서명한 수표를 대금지급을 위하여 우편으로 상인에게 전송할 때 상인이 수취가 가능한 계정에서 소비자의 계정으로 ACH추심이체예탁을 하게 만든다(2001년 3월 13일 발행된 규정 E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Staff Commentary(스탭코멘트)의 개정에 따른 것임) ARC예탁을 위하여 소비자와 수신자가 명확하게 동의해야 하는지가 ARC입력의 선결요건은 아니고 단지 소비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충분하다!) ARC 입력은 ACH Rule 2.9에 의해서 규율되며 「규정 E_J와 일치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수표처리자격을 열거하고 있다. 첫째 일련번호, 둘째 소비자계정번호, 셋째 소비자 및 수신자의 서명 등이다; ACH Rules, 2.10.

35) TAE(Telephone-Authorized Entries)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지시인은 상업적으로 상당한 사기거래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립한다. 둘째 만약 원지시인이 기업이고 자연인아 아니라면,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은 원지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상업적으로 상당한 절차의 설립, 원지시인의 신용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의 설립, 원지시인의 신분노출을 제한하기위한 절차의 설립, 신분노출을 제한과 관련된 원지시인의 입력을 감독 및 주기적으로 신분노출을 검증하기위한 절차의 설립, 셋째 원지시인은 은행의 번호표가 유용한지를 입증하기위한 상업적으로 상당한 절차의 설립 등이다.

36) B.K. Stone, Corporate Trade Payment: Hard Lesson in Product Design, *Economic Review Federal Reserve Bank Atlanta*, Apr. 1986. pp.9-11.

37) CTP(Corporate Trade Payment)의 도입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X12.4 지급지시/송금통지가 서로 양립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B2B의 거래를 위해 EDI의 한 부분으로서 전미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NSI)의 공인표준위원회(Accredited Standards Committee; ASC)의 X12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NACHA 와 ANSI의 공동노력의 결과로서 X12.4 지급지시/송금통지는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에 CTP 포맷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더 나아가 1980년대 NACHA는 CTP의 대안으로서 CTX(Corporate Trade Exchange)를 도입하였고 CTP는 1994년까지 이용되었다.

38) file의 구성요소가 되는 정보의 단위.

성이 있을 뿐 아니라 메시지를 압축 시키거나 푸는 비용(packing and unpacking cost)이 지출되지 아니하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CCD방식이 있다.³⁹⁾ CCD는 자금이 기업간에 통합하거나 분배되는 경우에 이용되는 지급이체 및 추심이체방식이다. 그중에서도 현금집중방식은 전형적으로는 추심이체이며 현금분배방식은 지금이체이다. CCD는 독립형 자금이체방식으로서 지급정보이외에 다른 어떤 데이터도 전송되지 아니한다. CCD방식에서 발전된 CCD+방식은 자금이체와 관련된 제한된 지급금액만 지원한다. 또한 CCD+방식은 CTX방식의 대용으로서 무역정보가 많지 않은 무역결제에 이용된다.⁴⁰⁾ 거래방식은 국제금융기관간의 약정하에, 국내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은 스위프트(SWIFT)을 통하여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메세지를 수신받는다. 그런 후에 이 메세지를 ACH지급 및 추심이체로 전환하여 해외지급인(해외금융기관의 고객)과 국내폐지급(ACH시스템에 참여하는 국내국융기관의 고객)간의 결제에 이용한다. 패드와 비교하여 보다 저렴하게 국제결제시 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저렴한 이용료에도 불구하고 증개기관의 이체시스템보다 비용이 더 저렴 하는 경우에만 이용된다.

한편 패드는 거액이체의 특징으로써 ACH보다 그 이용이 다양하지 못하지만 그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첫째 패드는 주로 연방자금의 이체에 이용된다. 즉 연방자금의 이체규모의 약 80%가 패드를 통하여 거래되고 있다.⁴¹⁾

둘째 패드는 유가증권자금이체에도 이용되고 있다. 이를 패드의 book entry(계정이체)방식에 의한 국제결제방식이라 한다. 이 방식은 증권의 실물의 발행이 없이도 매각은행의 증권계정에서 매입은행의 증권계정으로 계정상으로만 국채를 이체하는 동시에 매입은행의 당좌계정에서 매각은행의 당좌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소위 증권자금 동시결제(Delivery-Versus-Payment; DVP)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제시차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셋째 그 외 CHIPS의 차액결제, 은행간 수표결제, 재정(financing)거래 및 유로달러투자 등에도 이용되고 있다.

IV. 위험관리정책상의 비교

패드이체가 거액인 점에 비하여 ACH이체는 소액이체이다. 따라서 ACH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결제위

39) CCD방식은 기업의 본사에 수신된 총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러 자회사의 다양한 계정으로 전일 밤에 입금된 자금을 중앙집중화 된 계정으로 이체시키는 방식이다. CCD는 PPD방식과 함께 국제간 ACH이체 주로 이용된다; 그 외 Acknowledgement: ACK(CCD포맷을 이용하여 기업이체지급의 수신자거래은행이 수취한 수취증명서를 제공하는데 이용됨; ACH Rule 13.1.2.와 ATX(CTX포맷을 이용하는 기업이체지급의 수신자거래은행이 수취한 수취증명서를 제공하는 데 이용됨; ACH Rule 13.1.9)가 있다.

40) 80문자를 가진 레코드에만 이용된다.

41) Weger, B. ACH for Bank-Centric EBPP long Used for Recutting bills, Bank System and Technology, Vol. 40, No. 40, 2003, pp.12-14.

험은 패드에서 발생되는 위험보다 잠재적으로 적을 수 있다. 또한 ACH결제에서 일시적 노출시간은 패드이체보다 더 짧다. 그 이유는 ACH거래의 특징이 패드가 지급이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지급이체와 추심이체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급이체와 추심이체가 자금이체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지급거래는 결제일 1-2일전에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이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방출함으로서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추심거래는 결제일 1일전에 이루어진다. 이처럼 일시적 노출은 지급이체와 결제간의 결제시점 차이에 의한 일시적 갭, 추심이체결제의 잠재적 특성, 지급이체와 추심이체 두 가지 모두에서 지급이 지연된 최종성(finality), 즉 ACH결제의 전통적 모델에서는 익일결제(next-day)의 최종성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⁴²⁾

그러나 1999년이래로 지급이체에서 일시적 노출은 동일한날 결제의 최종성을 도입함으로서 일말결제(end-of-day)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감소되었다.⁴³⁾ 동일한 날 결제의 최종성은 수신자거래은행이 수신자가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제공한 이후 원지시인거래은행의 파산, 연방준비은행의 결제파기(reverse), 수신자거래은행이 수신자로부터 자금을 강제로 환급을 받을려고 시도하는 위험을 제거시킨다. 이와 같은 위험감소조치때문에 신용능력이 약한 금융기관이 지급이체시에 연방준비은행은 선자금(prefunding)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선자금요구조건은 실시간으로 이체거래가 관리되고 있는 은행들에게도 적용된다.⁴⁴⁾

ACH 추심거래는 잠정적인 지급의 형태이다. 그 이유는 원지시인의 계정에 지급이체된 지시금액은 부도수표처럼 수신자거래은행이 환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은행은 결제일 다음 영업일 개시시점이 후에 일방적으로 원지시인거래은행에 제공된 지급을 파기하지 않는다.⁴⁵⁾ 이것은 수신자거래은행의 환급이 없다면, 지급은 결제일 다음영업일개시시점에 최종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수신자거래은행이 폐쇄되었거나, 결제일에 영업이 폐쇄되어 지급이 중지되었다면 다음영업일까지 ACH 인출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을 경우 연방준비은행은 금융손실에 직면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심이체에서 신용위험은 주로 수신자거래은행에게서 발생한다. 이 위험은 수신자거래은행이 원지시인에게서 자금을 이체할 수 없거나 거절된 추심이체의 자금을 이체받기 전에 원지시인이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⁴⁶⁾ 첫째 1987년 이래로 금융적 어려움을 경험한 은행들의 ACH지급이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왔다. 필요할 경우 방출되는 지급이체금액에 대한 자금을 먼저 적립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연방준비은행의 자동정산소항목의 통일운영회람 부록 C(Appendix C of the Uniform Operating Circular on Automated Clearinghouse Items of the Federal Reserve Banks; UOCACIFRB)에서는

42) A delson, L.A. The Number of Automated Clearing House transaction could hit 18 billions by 2010, Bank System and Technology, Vol. 40, No. 7, 2003, pp.23-25..

43) <http://www.federalreserve.gov/paymentsystem>, 20 Nov., 2007.

44) Federal Reserve Bank's Uniform Operating Circular 11.2.

45) <http://www.nacha.org>, 19 Nov., 2007.

46) 52 Fed. Reg. 49,086 (1987).

금융적 위기를 겪은 금융기관들이 ACH거래에 관하여 연방준비은행의 관리감독과 연방준비은행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먼저 적립한다는 약정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추심이체에서 예탁금의 반환에는 조기데드라인이 적용된다. ACH 지시의 수신 및 철회하기를 원하는 은행은 결제일 다음 제2은행영업일에 전송은행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신은행의 ACH 운영자가 설정한 테드라인까지 지급지시를 철회하여야 한다.⁴⁷⁾ 추심이체입력 지시철회를 위한 테드라인 설정으로 연방준비은행은 결제위험발생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동정산소의 일반적인 테드라인은 즉시 결제를 위한 동부시간대로 오후 2시이며 익일 결제를 위해서는 동부시간대로 오후 3시이다. 즉시 결제를 위한 추심이체는 전화로 철회할 수 있는 테드라인시간은 동부시간대로 오후 1시30분이다.⁴⁸⁾ 셋째 지급이체에서 결제일이 비표준 공휴일이나 주중에 전송은행이 폐쇄되었을 경우, 만약 전송은행이 영업중이거나 연방준비은행이 해당일에 영업중이라면 결제일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정책은 지급이체과정에 연방준비은행의 일시적 노출기간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⁴⁹⁾

한편 1985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총재위원회는 연방준비은행의 결제시스템인 패드(시중은행시스템 및 다른 결제메카니즘을 포함)에 제시된 거액지급시스템에 발생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⁵⁰⁾ 이 정책은 패드를 통한 자금이체의 결과로서 해당은행의 연방준비은행계정에 일광 과다인출을 발생시키는 금융기관들은 해당계정에 발생된 과다인출에 대한 최대 한도금액 및 순 순채무캡(net net debit gap)을 설정하는 것이었다.⁵¹⁾ 부가하여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일광과다인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책변경을 여러 번 단행하였다. 예를 들면 최소일광과다인출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비과세지의 변경 및 순 채무캡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증식이 포함된다.⁵²⁾

현행 연방준비은행의 결제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은 크게 다음의 세부분으로 구분된다.⁵³⁾ 첫째 연방준비계정에 일광과다인출금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연방준비계정을 가지고 있는 각 기관은 일광과다출금 순채무캡(net debit cap)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 기관의 캡은 각 기관이 연방준비계정에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최대 비담보성 일광과다출금액을 의미한다. 둘째 199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 연방준비은행이 연방준비계정에 있는 일 평균 일광과다인출금에 수수료를 부과시키는 방법이 있다.⁵⁴⁾ 일광과다인출의 총비용은 금융기관의 순채무캡으로 이용한 금액에 10%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감소될 수 있다. 즉 2주간을 기준으로 25달러 또는 그 이하의 금액이 공제된다. 비용측정

47) ACH Rule 5.1.2.

48) UOCACIFSB, Appendix 2.

49) ACH Rule 6.6.

50) 50 Fed. Reg. 21,120 (1985); Benjamin Geva, Daylight Overdrafts and Settlement failure-Credit Controls in U.S. Wire Systems, banking Law Bulletin, Vol.33, 1987.

51) 다음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 정책을 ACH이체, 계정이체(book-entry), 유가증권이체, 해외달러 정산 네팅, 민간사적 유가증권 정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체되는 자금에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52) 52 Fed. Reg. 29,255 (1987); 55 Fed. Reg. 22,092 (1990); 57 Fed. Reg. 47,084, 47,101; 63 Fed. Reg. 34,888(1998).

53) 현행 정책은 1985년에 개정된 지급시스템위험에 관한 정책성명서(Policy Statement on Payment System Risk; PSPS)에 포함되어 있다.

54) 1일 평균 일광과다인출에 대한 수수료는 1년 360일과 1일 24시간을 기준으로 36%를 적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패드 운영일을 1일 24시간(18/24)으로 나눈 년율을 꼽한 27%를 적용한다.

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는 패드이체 및 순 결제이체지시가 당일에 준비은행의 계정이나 정산소계정으로 이체되는 경우 일광과다인출을 계산하는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셋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는 일광과다인출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계속 및 회전계약을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⁵⁵⁾ 즉 오전에 자금을 상환할 의도로 일과 후 연방자금을 차입하는 은행들과 오전에 협상한 조건으로 오후에 자금을 다시 차입하는 은행들은 차입하는 금액들이 오전에 자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다음 일과 후 기간까지 회전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조치는 오전에 반환되고 오후에 재 차입되는 3-4시간의 일중 시간갭을 제거시켜 준다. 즉 회전 계약에서는 매일거래금액은 동일하고 계속계약에서는 금액은 변경되지만 반환되는 금액과 차입되는 금액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편 패드가 개별계약당사자가 유발하는 결제실패의 위험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 위험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장한 반면, 일상적인 유동성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처리절차는 복잡한 개별 패드을 통한 자금이체방식을 단순화시켰고 또한 결제참가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등 두가지면에서 전통적인 결제서비스의 질을 개선시켰다.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고에서 ACH와 Fedwire을 비교 분석한 결과 양 시스템간에 여러 유사한 점과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CH 거래가 기업간 및 상업적 거액거래에 집중되는 패드와 대비되며 소비자간 거래에 주로 이용되는 지급시스템이지만 약500,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용하기도 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ACH를 통한 모든 이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관련법은 아직없다. 다만 기업간 거래에 주로 이용되는 거액이체는 패드이체를 규율하는 제4A편이 ACH이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나머지 문제는 사적약정인 ACH 규칙이 대부분 규율한다. ACH이체의 특징 중의 하나는 지급데이터의 처리방식에 있다. 즉 지급이체는 원지시인이 그의 거래은행인 지급지시이행은행(ODFI)로 전송으로 시작된다. ODFI는 이 데이터가 포맷이나 프로토콜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일치하는지 결정하여 만약 일치하다면 원지시인의 데이터는 전송된 다양한 데이터와 함께 복합파일로 전환된다. ACH이체에서는 이 파일을 후속의 수신자에게 전송하기 위해서 ACH운영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패드에서는 원지시인과 거래은행이후에 지급지시를 수신하는 당사자로서 연방준비은행의 시스템이 존재할 뿐 이지만 ACH에서는 지급지시를 전송하는 당사자로서 운영자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이 양 시스템간에 대비된다. 또한 이 ACH운영자⁵⁶⁾를 ODFI는 연방준비은행 또는 민간운영자로 선택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후 ODFI는 복합지급지시를

55) Benjamin Geva, *op. cit.*, pp.3-33.

56) ACH운영자는 NACHA와 체결한 약정을 이행하는 연방준비은행 및 민간운영자로 정의하고 있다; ACH Rule 13.1.1.

뉴저지에 위치해 있는 East Rutherford의 연방준비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다. ACH 운영자로 연방준비은행과 민간운영자는 자격조건이 다르다는 점도 특색이 있다.⁵⁷⁾

그 외 패드이체와 ACH이체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적용면에서 패드는 지급이체만을 ACH이체는 지급이체와 추심이체양자에 적용된다. 둘째 데이치처리방식에서는 패드는 개별건수(single transaction)에 따라 처리되고 ACH는 일괄(batch)처리된다. 셋째 통신시스템은 패드는 전화처럼 양방향통신시스템을 사용하고 ACH는 전자우편처럼 일방향 통신시스템을 사용한다. 넷째 결제방식은 패드는 총액을 즉시결제하는 방식을, ACH이체는 순순(net net)결제방식을 사용한다. 다섯째 정상적인 이체지시의 이행시간은 패드에서는 일중결제를, ACH이체는 익일결제방식을 이용한다. 여섯째 전송된 메시지의 통지확인여부에서 패드는 전송자와 뿐 아니라 수익자에게도 개별적으로 통지확인이 필요하지만 ACH이체에서는 이와 같은 통지확인이 필요 없다. 일곱째 지급정보를 초월하는 추가적인 데이터의 전송은 패드는 제한되지만 ACH이체에서는 데이터의 제한 및 확장여부는 지급적용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어덟째 지급처리비용은 ACH이체가 패드이체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는 패드가 보안절차가 안전한 지급에 결정적인데 반하여 ACH이체에서는 중요한 부분일뿐 결정적인 요소가 아닌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패드에서 보안절차가 결정적인 이유는 패드가 ACH이체보다 상대적으로 거액 및 상업적 이체에 적용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문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금융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상업적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은 개방형 거액결제시스템의 결제구조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인 BOK-Wire는 한국은행이 1995년부터 구축하여 가동 중이지만 이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은행간 결제시스템이다. 즉 미국의 패드와 같이 제3자자금이체를 담당하는 개방형 시스템은 아니다. 한국에서 개별기업간 거액자금의 이체는 일부 시중은행에서 자체 통신결제시스템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은행간이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법인, 개인 은행 외국계 금융기관 및 지점도 거액자금을 전자적으로 이체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운영하는 개방적이며 통합적인 시스템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반드시 거액자금을 이체하기위해서는 결제 및 통신시스템을 미국의 CHIPS처럼 반드시 중앙은행이 소유하고 운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미국처럼 국제 금융시스템이 완전히 투명하지 못한 환경하에서 시장 및 참가자들의 신뢰를 받기위해서는 완벽한 보안절차의 유지 및 비용처리의 문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보다는 먼저 중앙은행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57) ACH운영자가 연방준비은행일 경우는 다음의 규정 중 하나 이상만 일치하거나 이행하면 되지만 민간운영자는 다음의 조건 중 모든 조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ACH 규칙의 준수 둘째 적어도 2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 셋째 ACH시스템에게는 정산 넷째 인도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ACH운영자에게는 교환거래를 제공할 능력 다섯째 ACH규칙의 요구조건에 기초한 데이터의 편집과 처리 여섯째 금융기관에 대한 응용위험 통제조치의 지불능력의 평가 일곱째 사적으로 운영되는 다자간 결제시스템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정책의 준수 및 NACHA의 ACH 운영자 이행표준 준수 등이다.

참 고 문 헌

- 유선기, “전자자금이동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7.
- 이병렬, “신국제결제시스템으로서 전자자금이체에서의 고객보호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9.
- 이병렬, “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CHIPS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 12.
- 이병렬·이천우, “은행간 온라인결제시스템에서 결제실패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제20권 제1호, 2005.3
- _____, “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CHIPS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12,
- 정경영, “자금이체제도의 법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4.
- _____,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07.
- Baxter Thomas C. and Freis James H., “Electronic Commerce and Transactions Article 4A and Electronic Payments”, American Law Institute-American Bar Association Continuing Legal Education ALI-ABA Course of Study”, December 1998.
- B. Weger, “ACH for Bank-Centric EBPP long Used for Recutting bills, Bank System andTechnology”, Vol. 40, No. 40, 2003.
- Credit Union, “New ACH efficiencies have credited faster cash flows and realtime financial data for consumer,” CREDIT UNION MAGAZINE, Vol. 67, No. 11, 2001
- _____, “ACH payment hit the web NACHA’s new guidances could boost ACH internet payment,” CREDIT CARD MANAGEMENT, Vol. 14, No. 7, 2001,
- Crawford Bradley,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 The influence of Article 4A on the Model Law,” Cansas Business Law Journal, Vol. 19, 1991.
- Cooper, C. “Closed for Take Offbacs is preparing to become the main automated clearing house in Europe”, Financial World, Vol. 50, 2003.
- Fry Patricia Brumfield, “Basic Concepts in article 4A : Scope and Definition,” The Business Lawyer, Vol. 45, 1990.
- Geva Benjamin, “Recent UCC Article 4A Jurisprudence: Critical Analysis”, Uniform Commercial code Journal, Vol. 36. No. 2, fall 2003.
- _____, The Law of Electronic Funds Transfers, Matthew Bender, Dec. 2003,
- _____, “Daylight Overdrafts and Settlement failure-Credit Risk Controls in U.S. Wire Systems,” Banking Law Bullitine, Vol. 33, 1987.

L,A, delson, "The Number of Automated Clearing House transaction could hit 18 billions by 2010," Bank System and Technology Vol. 40, No. 7, 2003.

Paul S. Turner, Law of Payment System and EFT, Aspen Law & business, 2002.

Roger Leroy Miller & Gaylord A. Jentz, Law for e-commerce, West/Thomas Learning, 2002.

Stone B.K., "Corporate Trade Payment: Hard Lesson in Product Design", Economic Review Federal Reserve Bank Atlanta, Apr. 1986.

대부진실법(Truth in Lending Act; TILA) 및 「규정(Regulation Z)」.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s Transfers Act of 1978) 및 「규정 E (Regulation E)」.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및 「규정(Regulation Z)」.

ACH Rules.

Appendix of the Uniform Operating Circular on Automated Clearinghouse Items of the Federal Reserve Banks(UOCACIFSB)

Federal Reserve Bank's Uniform Operating Circular.

<http://www.ach.org>, 16 Jan., 2008.

<http://www.creditunionmagazine.com>, 10 Jan., 2008.

<http://www.federalreserve.gov/paymentsystem>, 20 Nov., 2007.

<http://www.fedwiredirectory.frb.org>, 10 Nov., 2007.

<http://www.nyfrb.org>, 20 Nov., 2007

<http://www.nacha.org>, 19 Nov., 2007

<http://www.oregonach.org>, 12 Nov., 2007.